

제4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덕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22조에 의거 제4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3월 29일(금)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 563 본사 대강당 (용인공장)

3. 회의목적사항

가.보고 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46기(2023년1월1일 ~ 2023년12월31일)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1호 의안 : 신주의 배당기산일에 관한 건(표준정관 반영 조문정비)

2-2호 의안 : 이사의 임기에 관한 건(임기단축)

2-3호 의안 : 부칙(2024.03.29)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직명	성명	생년월일	약력	추천인	최대주주 와 관계	회사와의 거래	채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재직여부	법정상 결격유무	비고
감사 후보	강병삼	80.11.20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現) 법률사무소 리만 변호사	이사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신규 (코스닥협 회추천)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 전자위임장 관리시스템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에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03월 19일 ~ 2024년 03월 28일

- 기간 중 첫날은 오전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가능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 당사는 주주총회 시 일체의 경비 및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3.0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 563
국 일 제 지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강 태 현 (직인생략)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 12 조(신주의 배당기산일) ①(생략) ②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그 배당기준일까지 발생한 신주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신주의 배당기산일) ①(생략) ②(삭제)	표준정관 준용
제 34 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 34 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이하 생략)	임기단축
부칙 (본조 신설)	부칙 이 정관은 2024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본조 신설

제6호 의안 : 임원퇴직금규정 변경의 건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 4 조[퇴직금산정] 1.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최종 1 년 동안 지급한 월 기본급 기준으로 아래항의 해당 직위별 지급율(액)을 총 재임기간에 곱(乘)하여 산정·지급한다. 2~3. (생략) <표> [1 년 동안 지급한 월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을 곱하여 산정] 회장 : 4 개월 분 / 사장 : 3.5 개월 분 전무 : 3 개월 분 / 상무 : 2.5 개월 분 상무보 : 2 개월 분	제 4 조[퇴직금산정] 1.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최종 1 년 동안 지급한 <u>연봉의 월할분</u> 기준으로 아래항의 해당 직위별 지급율(액)을 총 재임기간에 곱(乘)하여 산정·지급한다. 2~3. (생략) 4. 퇴직금 계산 방법(지급배수 등)은 2024.01.01.이전 기간은 종전 기준, 이후 기간은 개정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구분 계산한다. 대표이사 : 근속년수 X 2 배 (대표이사로 재임한 기간만 적용)	배수 조정 : 대표이사만 2 배수 (대표이사 재임기간에 한함) 기준기준액 : 기본급에서 연봉의 월할분
제 11 조[명예퇴직금] 1. 회사는 임원이 퇴임하는 경우 월 기본급의 3 개월분을 퇴직 위로금으로 지급하며, 재임기간 중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명예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3. (생략)	제 11 조[명예퇴직금] 1. 재임기간 중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명예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3. (생략)	"회사는 임원이 퇴임하는 경우 월 기본급의 3 개월분을 퇴직 위로금으로 지급하며," 삭제